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CONTENTS

제1장 개요

- 1. 목표 3
- 2. 수유시설의 정의 3
- 3. 수유시설 현황 3
- 4.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4

제2장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기준

- 1. 공간 구성 6
- 2. 비치물품 및 관리 8
- 3. 환경 관리 11

제3장 수유시설 운영 및 이용수칙

- 1. 수유시설 관리자 운영수칙 15
- 2. 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 16

제4장 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적 근거

- 1. 설치 관련 법적 근거 18
- 2. 설치장소 규정 21

[부 록]

- 가. 수유시설 관리자 운영수칙 23
- 나. 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 24
- 다. 모유수유/착유실 관리 점검표 25
- 라. 가족수유실 관리 점검표 26
- 마. 수유시설 이용자 의견수렴 카드 27
- 바. 수유시설 실태조사 점검표 28

제1장

개 요



제1장 개요

1 목표

-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안내를 통해 수유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 더불어, 대국민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2 수유시설의 정의

-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시설 이용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모유수유/착유실** : 엄마와 아기 또는 수유부 전용 공간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모유수유에 집중할 수 있고, 직접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모유를 짜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 **가족수유실** : 기존의 수유실 이용 대상(엄마와 아기)을 가족(아빠 포함)으로 확대한 개념으로 수유 외에도 기저귀 교환, 이유식 등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

3 수유시설 현황

- 「수유시설 검색 누리집(www.sooyusil.com)*」 기준으로 총 3,033개소(2021. 5. 13. 현재)가 등록되어 있다.
 - * 수유가 필요한 국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PC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위치 기반의 수유시설 정보(수유시설 주소·지도·길 찾기, 연락처, 시설 사진 등)를 2018. 8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정보를 수시로 갱신하고 있음
- 설치유형별로는 공공청사 678개소(22.4%), 공공기관 687개소(22.7%), 교통시설 520개소(17.1%), 공공·다중시설 970개소(32.0%), 학교·교육기관 24개소(0.8%), 기업체에 154개소(5.1%)가 설치되어 있다.

- 수유실은 아기의 안정적인 수유를 돕기 위해 일정시간 이용자가 머무르는 공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화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및 이용자에게 공용공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수유시설 관리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유시설 관리·운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는 공용공간에 대한 이용수칙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요구에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제2장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 기준



제2장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 기준

1 공간 구성

가. 설치 위치와 안내

- 수유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 이용자가 수유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입구와 층별 안내도에 수유시설 위치를 표시·안내한다.
- 수유실 안내 표지판은 젃병 이미지 사용 대신 모유수유 이미지를 권장한다.
- 수유시설 내에는 용도 구분에 따른 안내 표지판 (모유수유/착유실, 가족수유실)을 부착하여 수유실별 이용 가능 대상을 안내한다.
- 수유실 내 세면대가 없을 경우 근접거리(1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용도 및 규모

- 수유시설 구분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유수유/착유실 : 엄마와 아기, 수유부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나 모유를 착유하여 보관이 필요할 때 이용
 - 가족수유실 : 육아가족(아빠 포함)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유를 포함한 육아활동(기저귀 교환, 이유식 등) 시 이용
- 수유실은 수유(착유) 목적 외 다른 용도(휴게실, 접견실, 서고, 창고 등)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임신부 등 여성 휴게시설로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모유수유 공간은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마련한다.
- 공간 규모는 시설별 최소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이용대상	용도	최소 이용인원	공간기준
모유수유/착유실	엄마와 아기, 수유부	모유수유, 모유착유	2명 (1가족)	10㎡ 이상
가족수유실	가족 (아빠 포함)	수유, 기저귀 교환, 이유식	4명 (1가족)	15㎡ 이상

* 착유공간은 최소 6㎡ 이상 확보

참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년)

다. 내부 환경과 구조물

○ 사생활과 안전 보호조치

- 모유수유/착유실(가족수유실 내 모유수유 및 착유공간 포함)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단독 공간으로 분리하고, 여러명이 동시 이용할 경우를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한다.

* 여성 휴게실 내 수유실은 커튼 사용 가능

- 모유수유/착유실에 사용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부착하고, 안전을 위해 이용자 움직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바닥과 문 사이 공간(15cm 가량) 확보, 움직임 감지기 설치, '사용 중/비어 있음' 표식 설치 등

○ 바닥, 벽, 천장재

- 바닥재는 오염물 제거가 쉽고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미끄럽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 벽지는 이용자가 몸을 기대거나 손을 짚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제품을 사용하며,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눈부심이 적고 단순한 무늬의 소재를 사용한다.

- 내마모성, 내수성, 내진성, 내화성, 내방충성이 강하며, 방음이 잘되는 소재를 사용한다.

○ 가구 등 집기 배치

- 수유실 가구와 집기는 이용자의 편의와 공간 활용을 위해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실내색채

- 실내색채는 색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여 강한 대비 색상보다는 스트레스 진정 효과가 있는 저채도와 차가운 계통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그 중에서도 옅은 이끼색, 청자색, 녹청색* 등은 심리적 안정감에 효과적인 색상이다.

* 출처 : 김미경 『사례를 통한 색채치료』, 학림, P.26~57, 2010

【색상별 효과】

구분	효과
빨간색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색이다
주황색	식욕을 돋우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색이다
노란색	호기심을 자극하고, 희망,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색이다
녹 색	긴장 완화 및 피로감 감소, 두통,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 조화로운 심리상태를 유도하는 색이다
파란색	두통, 스트레스, 신경계통에 도움을 주며 긴장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준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 향상에 좋은 색이다
보라색	심리적 에너지를 주는 색으로 생각과 감정을 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흰 색	고통 완화에 효과가 있고, 명상 등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

참고) 2013년 서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 비치물품 및 관리

가. 수유시설 용도에 따른 필수 및 권장물품

구분	용도	필수물품	권장물품
모유수유/착유실	모유수유, 모유착유	소파, 탁자, 손 소독제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온·습도계, 유축기, 소독기, 냉장고, 가림막(파티션 등), 공기청정기 또는 환기설비, 물티슈
가족수유실	수유, 이유식, 기저귀 교환	소파, 탁자, 손 소독제, 기저귀교환대, 가림막(파티션 등)	세면대, 전자레인지, 온·습도계, 유축기, 소독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또는 환기설비, 물티슈

* 세면대, 공기청정기는 시설 사정에 따라 공간별 모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족수유실부터 설치

* 가족수유실 내 유축기, 소독기, 냉장고는 별도 모유수유/착유실 공간이 없는 경우에 적용

나. 물품별 관리방법

* 용도별: 모유수유/착유실(모유), 가족수유실(가족)로 표기

* 비치 및 설치물품: 필수, 권장으로 표기

물품명	관리방법	용도	비치 구분
소파/ 탁자	- 수유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1일 1회 이상 깨끗한 천으로 닦아 청결하게 관리한다. * 위생관리를 위해 천 재질의 소파 사용은 피함	모유	필수
		가족	필수
가림막 (파티션 등)	- 가족수유실 내 모유수유/착유(공간)실이 별도로 없을 경우나 여러 명이 동시에 모유수유/착유실을 이용 할 경우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림막 등을 비치한다. * 가림막은 반대편이 비치지 않고,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 지지 않아야 한다. - 위생관리를 위해 깨끗한 천으로 1일 1회 이상 닦는다.	모유	권장
		가족	필수
기저귀 교환대	- 기저귀 교체시에 이용하며, 아기 피부가 직접 닿는 물품이고 용도상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 위생을 위해 1회용 커버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이용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띠를 설치하여 착용하도록 안내하며, 주기적으로 안전띠와 조임쇠 상태를 점검한다.	모유	권장
		가족	필수
세면대	- 세면대는 수유 전·후로 간단한 손 위생을 위한 곳으로 손 세정제(비누 등)를 구비하여야 하며, 손 씻기 외 사용을 금한다. * 손 위생 안내문 부착 - 세면대는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른 상태를 유지한다.	모유	권장
		가족	권장
유축기	- 염마 젖을 짜 때 사용하는 기구이며, 유축기 부품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세척과 소독을 한다. -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모유가 닿는 유축기의 모든 부품은 1회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거나 교체한다. - 소독은 부품에 따라 자비소독* 또는 소독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소독된 물품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하여 깨끗한 보관함에 보관한다. * 자비소독 : 끓는 물에 약 5분 내외로 소독하는 방법	모유	권장
		가족	권장

물품명	관리방법	용도	비치 구분			
소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축기 및 관련 부품(소모품 등) 소독시 사용하며, 유축기 소독 용도 외 사용을 금한다. - 소독기는 작동 여부를 매일 점검하며, 주 1회 이상 소독된 천으로 닦아 청결하게 관리한다. 	모유	권장			
		가족	권장			
냉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축한 모유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다른 음식물(음료 포함) 등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 냉장고(냉동고) 외부(손잡이, 문 등)는 매일 1회 이상 소독된 천으로 닦아 청결하게 관리한다. - 냉장고 내부는 성에 제거를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청소한다. - 모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고(냉동고) 온도를 매일 점검하고 관리한다. 	모유	권장			
		구분	온도 유지 구간	모유 보관기간	가족	권장
		냉장고	0~4℃	72시간 이내		
냉동고	-18℃ 이하	3~6개월				
전자 레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를 위해 수유 및 이유식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 1일 1회 이상 소독된 깨끗한 천으로 청소한다. 	모유	-			
		가족	권장			
온·습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눈 높이)에 벽걸이로 비치한다. -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모유	권장			
		가족	권장			
공기청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유실 내 생활 냄새, 과민반응(알러지) 유발 물질, 미세먼지 제거 등 공기정화 용도로 사용한다. - 공기청정기 외관 청소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다. - 제조사마다 여과기(필터) 교체 및 청소 방법이 다르므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관리한다. 	모유	권장			
		가족	권장			
손 소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없이 손쉽게 손위생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항균 효과가 보장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알코올 함유량 최소 62% 이상)으로 비치한다. - 소독제의 유통기한 관리는 필수이며, 소독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개봉 후 6~12개월 단위로 교체하도록 한다. 	모유	필수			
		가족	필수			
물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수유부)가 모유수유나 착유 시 유방 등을 깨끗하게 닦는 등 수유 전·후 위생관리를 위해 비치한다. - 물티슈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비치한다. 	모유	권장			
		가족	권장			

다. 기타 물품관리

비품종류	관리방법
정수기	- 정수기는 수유 용도로 사용하며, 비품의 특성상 세균번식이 쉽고 물때가 끼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물받이는 1일 1회 이상 관리한다. - 여과기(필터)는 제조사 기준에 따라 교체하고 관리한다.
가습기/제습기	-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실내의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 가습기는 하루 한 번 내부를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하며, 보관 시에는 완전히 말려서 보관한다.
아기침대	- 아기 수유 전·후에 사용한다. - 침대요(매트리스) 겹씨우개(커버)와 속씨우개를 분리해 겹씨우개는 세탁기로 세탁하고 속씨우개는 방수 처리된 경우 마른 천에 베이킹 소다수나 식초물을 묻혀 닦은 뒤 햇볕에 말린다.
발 받침 (풋-스툴)	- 수유 시 의자나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려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1일 1회 이상 깨끗한 천으로 닦는다.
수유쿠션	- 모유수유 시 필요하며, 아기 몸에 직접 닿는 제품으로 매일 씌우개(커버)를 교체한다. - 세탁 시 70°C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 관리한다.
보관함	- 수유 시 물품 보관용으로 용도 외 사용을 금한다. - 1일 1회 이상 깨끗한 천으로 닦는다.

3 환경 관리

가. 실내 조명

- 조명은 이용자들의 심리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선택한다.

- 공간 활용 목적에 따라 조도는 60 ~ 150Lux 내외를 권장한다.

【 KS 기준 조도표에 따른 권장 조도 】

구분	권장 조도(Lux)
계단, 복도, 상담실, 응접실	150 ~ 200 ~ 300
휴게실	60 ~ 100 ~ 150
침실(심야)	3 ~ 4 ~ 6

참고) 2018.12.24. KS A 3011 조도 기준(상점 및 주택)

나. 온·습도 유지

- 계절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냉·난방 설비를 갖춘다.

【계절별 최적 온·습도】

계절	구분	최적온도	최적습도
봄·가을		19~23℃	50%
여름		24~28℃	60%
겨울		18~20℃	40%

참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2019년 개정판)

다. 실내 환기

- 실내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키고 자연 환기가 어려울 경우 기계식 설비(환풍기, 공기청정기 등)를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하도록 한다.
- 신선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실내 공기 정화작용이 있는 식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된다.

【실내 공기질 정화식물 기능】

종류	기능
선인장, 호접란, 알로에	밤에 산소 배출
스킨답서스, 산호수, 아펠란드라	일산화탄소 제거
스파티 필름	아세톤, 이산화질소 제거
산세베리아	이산화탄소 제거, 음이온 방출
벤자민, 고무나무	이산화수소, 이산화질소 제거

라. 실내 소음 방지

- 수유실 내부 소음은 허용 기준인 50dB 이하로 유지한다.
- 외부 소음 차단 효과 및 심리적 안정감 유지를 위해 실내에 잔잔한 클래식 또는 경음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

대상지역	시간대 별 소음원		아침,저녁 (05:00~ 07:00, 18:00~ 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지구, 자연 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 도서관	확 성 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참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3항(2019.12.31.) 별표8

마. 실내 청소 및 소독

- 바닥청소는 1일 1회 이상 이용 시간 종료 후(또는 이용자가 없을 때) 실시하며, 오염물 및 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기와 깨끗한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공용공간 감염예방을 위해 주 1회 환경 소독제를 사용하여 실내를 소독한다.
- 쓰레기통은 세균번식 및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므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권장하며, 수시로 비우고 관리한다.
- 가구와 비품은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제3장

수유시설 운영 및 이용수칙



제3장 수유시설 운영 및 이용수칙

1 수유시설 관리자 운영수칙

수유시설 관리자는 쾌적한 수유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수칙에 따라 관리한다.

- 가. 이용자가 수유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입구와 층별 안내도에 수유시설 위치를 표기·안내(안내표시는 모유수유 이미지 사용)하고, 수유실 내 안내 표지판(모유수유/착유실, 가족수유실)을 설치하여 수유실별 이용가능 대상을 안내한다.
 - * 모유수유/착유실(가족수유실 내 공간 포함)은 엄마(수유부 포함)와 젖먹이 아기 전용 공간이며, 가족수유실은 남성(아빠 등)도 이용 가능함을 안내
- 나. 청결한 환경 관리를 위해 수유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관리 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성한다.
 - * 점검표에는 점검일자, 점검내용, 비품상태, 관리자 등에 대한 정보 명시
- 다.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이용자 기본수칙 안내판을 제작하여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한다.
 - * 이용자 기본수칙에는 시설·물품이용 기준, 이용자 의견수렴 카드 작성 안내, 관리자 연락처 등 안내
- 라. 수유시설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이용자 눈에 잘 띄고 작성하기 편리한 위치에 수유시설 이용자 의견수렴 카드와 수거함을 비치한다.
 - * 이용자 의견수렴 카드에는 이용 목적 및 인원, 방문후기 등 작성
- 마.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유시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유무를 수시 점검한다.
 - *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중' 스티커를 시설 내·외부에 부착
- 바.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해 응급의약품 및 구급함을 구비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한다.

- 사. 수유실 내 설치 및 비치물품은 시설 구분에 따라 최소한의 물품으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필요 시 요청에 따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 아. 수유실 내에는 모유수유 장점 등을 알리는 홍보물이나 관련 도서를 비치한다.
 - * 분유(모유 대체품) 광고나 관련 홍보물품을 비치하지 않도록 함

2 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

수유시설은 필요 시 아기를 동반한 엄마와 보호자(아빠 등)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수유환경 유지를 위해 시설 관리자는 공용 공간에 대한 이용자 기본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가. 이 시설은 수유를 위한 아기와 보호자 출입시설이므로, 고유 목적 외의 이용이나 일반인은 출입을 하지 않는다.
- 나. 수유(이유식) 목적 외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하지 않는다.
- 다. 수유실 내 물품 등은 수유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 * 세면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보관함 등
- 라. 공용물품 사용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훼손되었을 경우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시설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마. 수유실 비치 소모품은 제한된 수량만 제공되므로 다음 사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한다.
- 바. 수유실 내에서는 가급적 통화를 자제하고, 수유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 사. 다른 이용자에게 불안감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큰소리로 대화·통화, 모유수유/착유실 내 영상통화나 남성 출입 등
- 아. 안전사고 및 필요물품 발생 시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한다.

제4장

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적 근거



제4장 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적 근거

1 설치 관련 법적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1. 30.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다만, 법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 포함) 시에는 편의시설을 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 관련)

<p>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p> <p>가. 일반사항</p> <p>(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p> <p>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p> <p>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p> <p>-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권장) * 녹색부분은 의무</p>	
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무)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의무)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권장)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판매시설 (권장)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교육연구 시설 (권장)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노유자시설 (권장)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권장)	
업무시설 (권장/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숙박시설 (권장)	관광숙박시설

공장(권장)	
방송통신시설 (권장)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교정시설 (권장)	교도소·구치소
관광휴게시설 (권장/의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권장)
	휴게소(의무)
장례식장(권장)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 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임산부 휴게시설

2.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도시철도 역사, 환승시설, 공항 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 역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 록



가. 수유시설 관리자 운영수칙

1. 이용자가 수유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입구와 층별 안내도에 수유시설 위치를 표기·안내합니다. 안내 표지판은 젖병 이미지 사용 대신 모유수유 이미지를 권장합니다.
2.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표지판(모유수유/착유실, 가족수유실)을 부착하고, 모유수유/착유실은 엄마와 젖먹이 아기 또는 수유부 전용 공간임을, 가족수유실은 아이를 동반한 남성(아빠 등)도 이용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 청결한 환경 관리를 위해 수유시설 내에 관리 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작성합니다.
 - * 점검표에는 점검일자 및 내용, 물품보유 현황, 관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합니다.
4.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을 게시합니다.
5. 수유시설 개선을 위해 이용자 눈에 잘 띄고, 작성하기 편리한 위치에 ‘수유시설 이용자 의견 수렴카드’와 ‘수거함’을 비치합니다.
 - * 이용자 기본 수칙에는 시설·물품 이용 기준, 관리자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수유시설 이용자 의견 수렴카드에는 이용 목적 및 인원, 건의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유시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유무를 수시 점검합니다.
 - *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중’ 스티커를 시설 내·외부에 부착합니다.
7. 이용자 안전사고를 대비해 응급의약품 및 구급함을 구비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합니다.
8. 수유실 내 설치 및 비치물품은 시설구분에 따라 최소한의 물품으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필요 시 요청에 따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수유실 내에는 모유수유 장점 등을 알리는 홍보물이나 관련 도서를 비치합니다.
 - * 분류(모유 대체품) 광고나 관련 홍보물품을 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 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

구 분	안내사항
이용대상	본 시설은 수유를 목적으로 마련된 아기와 보호자 출입시설로, 고유 목적 외의 이용이나 일반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용시간	<p>평일 : 00시~00시, 토요일 : 00시~00시, 공휴일 : 00시~00시</p> <p>* 시설별 개방(이용가능) 시간 기재</p>
수유실 이용예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유(이유식 섭취) 목적 외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2. 수유실 내 물품 등은 수유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면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보관함 등 3. 공용물품은 사용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훼손된 물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아래의 연락처로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수유실 비치 소모품은 다음 이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유할 수 있도록 수유실 내에서는 통화 또는 큰소리로의 대화를 자제하여 주십시오. 6. 다른 이용자에게 불안감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모유수유/착유실 내 영상통화나 남성 출입)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7. 안전사고 발생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	<p>○ 수유시설 개선을 위해 수유시설 이용자 의견수렴 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작성하여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p> <p>* 작성하신 내용은 수유시설 이용 통계 및 개선 목적으로 활용됩니다.</p> <p>○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 000-0000으로 연락 주십시오.</p>

다. 모유수유/착유실 관리 점검표 ※ 시설비치용

○ 점검일자 : 년 월 일

관리담당자 : _____

연락처 : _____

양호: ○ 보통: △ 미흡: X

구분	필수 및 권장 물품						구분	기타 물품					
비치물품	확인 내용						비치물품	확인 내용					
점검시간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점검시간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점검자							점검자						
소파 (의자)	필						관리점검표						
탁자	필						정수기						
가림막 (파티션)	권						가습기/제습기						
기자귀 교환대	권						아기침대						
세면대	권						발 받침 (풋-스툴)						
유축기	권						수유쿠션						
소독기	권						보관함						
냉장고	권						휴지통						
전자레인지	-						냉/난방기						
온도계/습도계	권						거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권						의견수렴 카드						
손 소독제	필												
물티슈	권												
환경	바닥						온도/습도						
	냄새/환기						실내소독 (주1회)						
기타사항:													

※ 시설에 비치된 물품항목으로 작성·활용하세요.

라. 가족수유실 관리 점검표 ※시설비치용

○ 점검일자 : 년 월 일

관리담당자 : _____

연락처 : _____

양호: ○ 보통: △ 미흡: X

구분		필수 및 권장 물품						구분	기타 물품					
비치물품		확인 내용						비치물품	확인 내용					
점검시간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점검시간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점검자								점검자						
소파 (의자)	필							관리점검표						
탁자	필							정수기						
가림막 (파티션)	필							가습기/제습기						
기저귀 교환대	필							아기침대						
세면대	권							발 받침 (뚫-스툴)						
유축기	권							수유쿠션						
소독기	권							보관함						
냉장고	권							휴지통						
전자레인지	권							냉/난방기						
온도계/습도계	권							거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권							의견수렴 카드						
손 소독제	필													
물티슈	권													
환경 환경	바닥							온도/습도						
	냄새/ 환기							실내소독 (주1회)						
기타사항:														

※ 시설에 비치된 물품항목으로 작성·활용하세요.

마. 수유시설 이용자 의견수렴 카드 ※ 시설비치용

수유시설 이용자 의견수렴 카드

※ 작성하신 내용은 수유시설 이용현황 통계 및 관리운영 개선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시고, 작성이 끝나면 카드함에 넣어주세요.

1. 언제 이용하셨나요? 년 월, 가 오전 나 오후

① 평일 ② 주말 ③ 공휴일

2. 누구와 함께 이용을 하셨나요?

① 아기와 엄마 ② 혼자(수유부) ③ 아기와 아빠 ④ 가족(조부모 등) ⑤ 기타

3. 이용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① 모유수유 ② 모유착유(유축) ③ 분유수유, 이유식 섭취 ④ 기저귀교환
⑤ 휴식 ⑥ 기타

4. 거주 지역은 어디인가요?

예) 서울, 부산, 경기 등

5.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인상 깊었던 좋은 점이나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등

바. 수유시설 실태조사 점검표 ※실태조사용

1) 기관현황

※ 제3자 정보제공¹⁾ 동의 미동의

기관명		수유실 면적	m ²	
주 소				
운 영 현 황	○ 일시 중단 (사유:) ○ 폐쇄 (사유:) ○ 이전 ()			
기 관 구 분 ²⁾	○ 청사 ○ 공공기관 ○ 교통시설 ○ 공공(다중)시설 ○ 학교 ○ 기업체(민간기관)			
용 도 구 분	<input type="checkbox"/> 모유수유/착유실 <input type="checkbox"/> 가족수유실			
이 용 현 황	대 상	○ 외부인 ○ 직원 ○ 외부/직원		
	일평균	○ 5명 이하 ○ 6명 이상 ~ 10명 이하 ○ 11명 이상 ~ 20명 이하 ○ 21명 이상 * 젖먹이 아기와 엄마(보호자)는 1명으로 간주		
관 리 주 기	○ 2시간마다 ○ 일 2회 이상 ○ 일 1회 ○ 격일 ○ 1주 2회 ○ 1주 1회 ○ 기타 ()			
담당자	(서명)		연락처	

조 사 일 시	년 월 일 시	조사자명	
------------	------------------	------	--

- 1) 정보제공 범위: 주소, 위치, 담당자 및 연락처, 아빠 이용 가능 여부, 시설 사진 등
 정보제공 목적: 수유시설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보건소 제공 또는 수유실 검색 누리집 (<https://sooyusil.com>)에 게시
- 2) 청사: 광역시·도 청사, 시·군·구청사,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공공기관: 도서관, 관공서, 아동 관련 복지시설(관), 지방 소재 정부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 체육시설, 공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교통시설: 지하철 및 전철역, 철도역, 터미널, 공항, 항만
 공공(다중)시설: 쇼핑몰, 극장(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전시관, 관광휴게시설, 종교 시설 등
 학교: 대학교, 방송통신대, 교육원, 직업훈련소(그 밖의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기관
 기업체(민간기관): 기타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관

2) 수유시설 관리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공간	위치	1. 수유실에서 세면대까지 이동 거리는 10m내에 있는가?		
	규모	2. 시설 용도(모유수유/착유실, 가족수유실)에 따른 기본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참고) 모유수유/착유실 10m ² , 가족수유실 15m ²		
	공간 구성	3. 이용자 동선 등 편의를 고려하여 물품이 배치되어 있는가?		
		4. 모유수유/착유 공간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잠금 장치 또는 공간을 분리(커튼, 가림막 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환경	조명	1. 수유시설에 적합한 조도인 60~150Lux를 준수하고 있는가?		
	실내 온도/ 공기	2.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참고) 봄·가을 19~23℃, 여름 24~28℃, 겨울 18~20℃)		
		3. 계절별 실내 적정습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참고) 봄·가을 50%, 여름 60%, 겨울 40%		
		4. 환기를 위한 창이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창문 <input type="checkbox"/> 공기청정기 <input type="checkbox"/> 환풍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음	5. 50dB의 실내 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3) 수유시설 청결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평가점수	주요의견
필수 및 권장 물품	소파(의자)		
	탁자		
	세면대(거울포함)		
	기저귀교환대		
	가림막(파티션 등)		
	공기청정기 또는 환기설비		
	전자레인지		
	유축기		
	소독기		
	냉장고		
	바닥의 오염 정도		
	불쾌한 냄새 정도		
기타 물품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수유쿠션		
	발 받침(푹-스툴)		
	아기침대		
	보관함		
	휴지통		
시설 담당자 인터뷰 등 전달내용 :			

3) 평가방법 : 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미흡, 매우 미흡의 경우 사유 작성)

4) 시설 및 물품비치(보유) 현황

필 필수물품 **권** 권장물품

필수 및 권장 물품				기타 물품	
비치 물품	확인 내용			비치 물품	확인 내용
	모유수유/ 착유실		가족수유실		
소파(의자)	필		필	관리점검표	
탁자	필		필	정수기	
가림막(파티션)	권		필	가습기/제습기	
기저귀교환대	권		필	아기침대	
세면대	권		권	발 받침 (뚫-스툴)	
유축기	권		권	수유쿠션	
소독기	권		권	보관함	
냉장고	권		권	휴지통	
전자레인지	-		권	냉/난방기	
온도계/습도계	권		권	거울	
공기청정기 (또는 환기설비)	권		권	의견수렴 카드	
손 소독제	필		필		
물티슈	권		권		
기타사항:					

※ 확인내용 : 설치 및 파손여부에 따라 “O, X, 파손”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항목에 없는 경우 공란 및 기타사항에 추가 작성)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2021. 05. 인쇄

2021. 05. 발행

발행처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전화번호 02-2634-8212

※ 본 책자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함.



<https://sooyusil.com>

전국 공공 수유시설 위치 및 정보 제공 사이트



<http://www.childcare.go.kr>

모유수유 전문가 상담사이트

전화상담 1644-7373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